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87회 임시회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집행부발의】
검토보고서



2022. 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2. 4. 13.

기획행정위원회

1. 검토과정

- 안건명: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 제출자: 달서구청장(세무과장)
- 제출일자: 2022. 4. 1.
- 회부일자: 2022. 4. 1.
- 검토기간: 2022. 4. 2. ~ 4. 6.(5일간)

2. 제안이유

- 수년째 지속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착한임대인(임대료 인하 건물주), 개인사업자와 법인, 지원의료기관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통한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자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대구시 “코로나19 관련 피해 세제 지원 계획”에 의하여 재산세, 주민세 등을 감면하기 위해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감면 대상
 -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감염병 전담 병원, 선별 진료소 운영 병원 등)

○ 감면 세목 및 비율

-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 재원 보전):
재산세(건축물분): 임대료 인하액의 10% 감면, 100만원 한도

○ 개인사업자 및 법인(우리구 자체 재원 부담)

- 주민세 사업소분의 개인사업자: 주민세 50% 감면, 5만원→2.5만원
- 주민세 사업소분의 법인 등: 주민세 50% 감면, 5만원→2.5만원

○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 재원 보전)

- 재산세 건축물 및 토지분: 의료업 부동산 25% 감면, 선별진료소는 면제
 - 지원 의료기관 운영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으로 하되, 선별진료소(임시건축물)는 전액 면제한다.
 -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면제, 세율: $330\text{m}^2\text{초과 사업소 연면적} \times 250\text{원}$
 - 주민세 사업소분 중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율의 납부 면제
- 주민세 종업원분: 6개월분 납부 면제, 세율: 월급여 총액 $\times 0.5\%$

○ 2022년 감면 예상액

- 2022년 우리구 지방세(구세) 감면 지원 예상액 : 16.5억여원 규모

감면 대상	감면내용 및 감면율	감면 세액 (예상액)
① 착한 임대인 감면 (市 특별교부금 보전)	· 착한임대료 동참 건물주 재산세(건축물) 감면 (임대료 인하액의 10%)	0.5억원 (300명 정도)
② 지원의료기관 감면 (市 특별교부금 보전)	· 의료기관 재산세(건축물,토지) 감면 (25%) · 의료기관 주민세 종업원분 등 감면 (6개월 면제) * 지원의료기관 : 대구보훈병원 등 6개소	8.5억원 (6개 병원)
③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법인) 등 감면	· 개인사업자, 법인의 주민세 사업소분 50% 감면 * 주민세 5만원 → 2만5천원 (50%↓)	7.5억원 (30,000개소)

※ ①항목, ② 항목 : 市 특별교부금으로 보전, ③항목 : 우리구 부담 (세입 7.5억원 감소)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지방세법」 제80조·제81조·제84조의2·제84조의3
- 대구시 코로나19 피해 관련 세제 지원계획[市 세정담당관-2576(22. 2. 23.)]

5. 검토의견

-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지역 경제가 지속적인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착한 임대인(임대료 인하 건물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대구시 “코로나19 관련 피해 세제 지원 계획”에 따라 구세를 감면하기 위해 구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 감면 대상 및 예상액은 “착한 임대인” 감면 300건 5천만원, “의료기관” 감면 6개소 8억 5천만원, “개인사업자 및 법인” 감면 30,000건 7억원 5천만원 등 16억 5천만원(市 특별조정교부금 9억, 구비 7억 5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기상황에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구세 감면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 계 법령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

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 ⑧.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의 적용 대상자로서 법 제2장 감면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감면 세목(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을 추가하려는 경우

②. ~ ④. (생략)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 ⑨. (생략)

□ 지방세법

제80조(과세표준)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 대구광역시 공문 】

코로나19 피해 관련 세제 지원 계획 [대구시 세정담당관 2576 ('22. 2. 23.)]

코로나19 피해 관련 세제 지원 계획 (대구시)

□ 추진 배경 및 방향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시민들의 외부활동 자제로 지역경제 어려움 직면
-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민생경제 지원
- 의료기관 감면분(구·군세) 및 착한 임대인 감면분(구·군세) 전액 시비 지원
-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감면분*은 구·군 재정으로 부담
 - * 20년 까지 전액 시세였으나, 세제 개편으로 21년부터 시세→자치구세로 전환

□ 지원 대상

- 코로나19에 의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의료기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

□ 지원 내용

①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원

- (사업소분개인사업주 주민세^{구군세}) 2022년도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주의 기본세율에 해당하는 주민세 50% 감면 (※ 5만원 → 2.5만원)
- (사업소분법인사업주 주민세^{구군세}) 2022년도 관내 사업소를 둔 자본(출자)금 30억원이하 법인의 기본세율에 해당하는 주민세 50% 감면 (※ 5만원 → 2.5만원)

②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전액 시비 지원)

- (재산세^{구군세})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 의료기관의 의료업 부동산 재산세 25% 감면
- (주민세)
 - 종업원분^{구군세} : 22. 1월 ~ 22. 6월분(6월간) 월급여총액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면제
 - 재산분^{구군세} : 2022년도 재산분 주민세 면제

③ 착한임대료 동참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전액 시비 지원)

- 영세한 소상공인 등을 위하여 2022년도 상반기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
 - * 건축물 재산세(임대료 인하액의 10%)를 감면. 단,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